



해외여행으로 기분 UP! 성실 세관신고로 세금 DOWN!

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

- ◆ 여행자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US\$600 이내
다만, 다음 물품은 면세범위(US\$600)이외 별도 면세



주류

1병 1ℓ 이하
US\$ 400이하



담배

1보루
200개비 이내



향수

60ml
이하

※ 만19세 미만(출생년도 기준) 미성년자는 주류, 담배 면세 없음

주요 신고대상

- ◆ 해외 구매물품*으로서 면세범위 US\$600 초과물품
※ 선물 등 무상물품, 국내면세점 구매 물품 포함
- ◆ US\$ 1만불 초과 외화, 원화 등 지급수단

성실신고자 세액감면

- ◆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관세의 30% 감면
※ 신고방법 : 세관신고서 작성시 [면세범위 초과물품] '있음' 에 체크 표시 후 세관구역 통과 시 세관직원에게 제출

신고불이행시 제재사항

- ◆ 납부세액의 40% 가산세 부과 ※ 2년이내 2회 초과할 경우 60%
- ◆ 허위신고, 대리반입하는 경우 - 통고처분이나 검찰 고발
- ※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> 국민관심서비스, 해외여행정보 통합사이트 투어패스(m.tourpass.go.kr) 또는 고객센터 ☎125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알아두면 유용한 여행자 면세 상식

- 1 가족끼리는 면세범위가 합산된다.
2인 가족이 \$900 기방 반입 시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**X**
- 2 면세점에서 산 물품은 모두 면세된다.
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\$3,000이지만, 면세범위는 \$600 **X**
- 3 자진신고하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.
관세의 30%(15만원 한도)가 감면 **O**
- 4 술, 담배, 향수는 \$600 면세범위에 포함된다.
\$600의 기본면세 범위와 별도로 술, 담배, 향수의 추가 면세 허용 **X**
- 5 미성년자의 면세범위는 다르다.
만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 제외 **O**
- 6 외국의 지인에게 받은 선물은 면세된다.
면세범위 \$600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 **X**
- 7 자진신고한 여행자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할 수 있다.
현장에서 세금납부가 원칙이나, 자진신고자에 한해 사후납부를 허용 **O**
- 8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였으면 신고대상이 아니다.
국내 반입하는 물품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관세 부과대상임 **X**
- 9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난다.
납부세액의 40% 가산세, 반복적 미신고자는 60% 증가산세 **O**
- 10 대리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대리반입을 부탁한 사람만 처벌된다.
대리반입을 부탁한 소유자 및 반입자 전원 밀수입죄로 처벌 **X**